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성장 조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신성장 조달기획관을 신설하면서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혁신조달기획관은 폐지하고, 구매사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혁신조달운영과의 명칭을 신성장판로지원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신성장판로지원과에 두는 정원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혁신지향 공공조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구매사업국의 1개 과를 폐지하면서 조달청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고, 조달청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6.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수출지원팀을 폐지하면서 공정한 평가·심사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평가관리팀을 신설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조달청 하부조직의 위계,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조달청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조달수출지원팀”을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10.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책 수립·시행
11.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 및 관리
12. 해외조달시장 진출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13.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조달시장 진출 교육 및 홍보

제5조의 제목 “(조달관리국)”을 “(공정조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달관리국장”을 “공정조달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달관리국에 전자조달기획과·전자조달관리과·공정조달관리과·조달가격조사과”를 “공정조달국에 공정조달총괄과·조달가격조사과·전자조달기획과·전자조달관리과·공정평가관리팀”으로, “전자조달기획과장·전자조달관리과장·공정조달관리과장 및 조달가격조사과장”을 “공정조달총괄과장·조달가격조사과장·전자조달기획과장 및 전자조달관리과장”으로, “조달등록팀”을 “공정평가관리팀장 및 조달등록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같은 조 제6항과 제3항을 각각 제4항과 제5항으로 하고 종전 제3항의 제19호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청 평가위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달청 심사·평가기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업무에 관한 사항
4. 평가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매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구매총괄과·혁신조달과·자재장비과·쇼핑몰기획과·쇼핑몰단가계약과·쇼핑몰구매과·국방물자혁신과 및 국방조달지원과를 두며, 구매총괄과장·혁신조달과장·자재장비과장·쇼핑몰기획과장·쇼핑몰단가계약과장·쇼핑몰구매과장·국방물자혁신

과장 및 국방조달지원과장은”을 “구매총괄과·신성장조달총괄과·국방
물자구매과·건설환경구매과·전기전자구매과·보건의료구매과 및 첨
단융복합제품구매과를 두며, 구매총괄과장·신성장조달총괄과장·국방
물자구매과장·건설환경구매과장·전기전자구매과장·보건의료구매과
장 및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11호로 하고, 제10호
를 다음과 신설한다.

10. 가격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조 “혁신조달과장”을 “신성장총괄
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 “혁신제품”을 “신성장조달 관련”으로,
같은 항 제2호와 3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4호와 제5호로 한다.

2. 신성장 분야 신규 조달물품 발굴

3. 신성장조달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같은 조 제9항을 제6항으로 하고 “국방물자혁신과장”을 “국방물자구매
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7. 군수품 중 피복·장구류, 의무장비, 일반차량 등의 계약 체결 및 관리

8. 보훈복지단체(군수품 관련 보훈복지단체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구 매제도 운영 및 제도 개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자재장비과장”을 “건설환경구매과장”

으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단가
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가. 건축 및 토목용 자재, 도로에 사용되는 물품 및 석재가공품, 콘
크리트제품 바닥·포장재 등

나. 운송장비, 특장차, 금속·플라스틱관류 등

다. 일반장비 및 특수장비 등

2. 지방조달청 소관 단가계약물품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수립

3. 건설환경분야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2단계경쟁 업무처
리기준 수립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쇼핑몰기
획과장”을 “전기전자구매과장”으로 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하
고 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단가
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가. 전산 및 사무장비, 전자제품, 교육용 제품, 텔레커뮤니케이션 장
비, 조명용품, 인쇄기, 사진기기, 농업용기계 등

나. 방송통신장비, 전기시스템, 공공안전 및 통제장비, 보안·감시 및
탐지장비 등

2. 전기전자분야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수립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쇼핑몰단가계약과장**”을 “**보건의료구매과장**”으로 하며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가. 의약품, 화학제품, 광물류, 화초류, 비료 및 사료, 가구, 청각기기, 시계 및 보석제품, 출판물 등

나. 화공·섬유제품, 금속기자재, 실물모형 등

2. 전통공예상품, 전통주, 전통식품 등 전통문화상품 계약을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쇼핑몰구매과장**”을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으로 하며,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가. 첨단산업(선박, 드론, 태양광발전장치, 전기·수소 자동차, 의료장비 등)

나. 융복합산업·녹색(친환경) 제품 등

2. 첨단융복합 분야 신상품 다수공급자계약 및 관리

제7조의2의 제목 “(**신기술서비스국**)”을 “(**기술서비스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기술서비스국장**”을 “**기술서비스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기술서비스국**”을 “**기술서비스국**”으로, “**건설용역과를**”을 “**건설기술계약과를**”로, “**건설용역과장**”을 “**건설기술계약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중 “**신기술물품·용역**”을 각각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용역과장**”을 “**건설기술계약과장**”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의 종합구매계획 수립·조정

제8조제2항 중 “**시설총괄과·토목환경과·건축설비과·시설사업기획과·설계예산검토과·예산사업관리**”를 “**시설총괄과·공무원가기준과·토목환경과·건축설비과·시설사업기획과·설계예산검토과**”로, “**시설총괄과장·토목환경과장·건축설비과장·시설사업기획과장·설계예산검토과장·예산사업관리과장**”을 “**시설총괄과장·공무원가기준과장·토목환경과장·건축설비과장·시설사업기획과장·설계예산검토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9항을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사업관리과장”을 “공사원가기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사 원가관리 총괄

제8조의2제2항 중 “원자재비측과·해외물자과·물품관리과·국유재산기획”을 “전략비측물자과·해외물자과·물품관리과·국유재산기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자재비측과장”을 “전략비측물자과장”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혁신조달기획관 등)”을 “(신성장판로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2항) 중 “혁신조달운영과장”을 “신성장판로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혁신조달기획관 및 혁신조달운영과”를 “신성장판로지원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2023년 6월 30일”을 “2025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34”를 “535”로 하고, 일반직 계 “533”을 “53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7”을 “8”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8”을 “27”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9”를 “20”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540”을 “541”로 하고, 일반직 계 “539”를 “54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7”을 “8”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8”을

“27”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9”를 “20”으로 한다.

별표 8 의 1)의 “혁신조달과”를 “신성장조달총괄과”로 한다.

별표 8의2의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2호 중 “혁신조달운영과”를 “신성장판로지원과”로, “2023년 6월 30일”을 “2025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9의 2호 “2023년 6월 30일”을 “2025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공정평가관리팀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공정평가관리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공정조달총괄과장이 분장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u>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조달수출지원팀</u> 및 조달회계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조달수출지원팀장 및 조달회계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u>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u>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⑥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u>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책 수립·시행</u>
<신설>	11. <u>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 및 관리</u>

<신설>

<신설>

⑦ 조달수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책 수립·시행
2.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 및 관리
3. 해외조달시장 진출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조달시장 진출 교육 및 홍보

⑧ (생략)

제5조(조달관리국) ①조달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조달관리국에 전자조달기획과·전자조달관리과·공정조달관리과·조달가격조사과 및 조달등록팀을 두되, 전자조달기획

업 지정 및 관리

12. 해외조달시장 진출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13.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조달시장 진출 교육 및 홍보

<삭제>

⑧ (현행과 같음)

제5조(공정조달국) ①공정조달국장-----

-.

② 공정조달국에 공정조달총괄과·조달가격조사과·전자조달기획과·전자조달관리과·공정평가관리팀 --- 공정조달총괄

과장·전자조달관리과장·공정조달관리과장 및 조달가격조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조달등록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공정조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생략)
<신 설>

⑥ (생략)

③ 전자조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8의3. (생략)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생략)

⑦ (생략)

⑧ <신 설>

과장·조달가격조사과장·전자조달기획과장 및 전자조달관리과장-----

----- 보하고, 공정평가관리팀장 및 -----

③ 공정조달총괄과장-----

1.~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현행 제6항과 같음)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1.~18의3.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청 평가위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달청 심사·평가기법 개발

⑨ (생략)

제7조(구매사업국) ① 구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② 구매사업국에 구매총괄과·혁신조달과·자재장비과·쇼핑몰기획과·쇼핑몰단가계약과·쇼핑몰구매과·국방물자혁신과 및 국방조달지원과를 두며, 구매총괄과장·혁신조달과장·자재장비과장·쇼핑몰기획과장·쇼핑몰단가계약과장·쇼핑몰구매과장·국방물자혁신과장 및 국방조달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구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생략)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가대행 업무에 관한 사항
4. 평가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7조(구매사업국) ① 구매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구매사업국에 구매총괄과·신성장조달총괄과·국방물자구매과·건설환경구매과·전기전자구매과·보건의료구매과 및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를 두며, 구매총괄과장·신성장조달총괄과장·국방물자구매과장·건설환경구매과장·전기전자구매과장·보건의료구매과장 및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구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혁신조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2. 삭제
3. 혁신제품 지정 관리
4.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

⑨ 국방물자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신 설>

<신 설>

⑩ 국방조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품 중 피복·장구류, 의무장비, 일반차량 등의 계약 체결 및 관리

<신 설>

3. 보훈복지단체(군수품 관련 보훈복지단체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구매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⑤ 자재장비과장은 다음 사항

10. 가격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신성장조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성장조달 관련 공공구매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2. 신성장 분야 신규 조달물품 발굴
3. 신성장조달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4. 혁신제품 지정 관리

5.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

⑥ 국방물자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군수품 중 피복·장구류, 의무장비, 일반차량 등의 계약 체결 및 관리

8. 보훈복지단체(군수품 관련 보훈복지단체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구매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⑦ 건설환경구매과장은 다음

을 분장한다.

1. (생략)

가. 화공·섬유제품, 금속기
자재, 실물모형 등

나. 일반장비 및 특수장비 등

2. 삭제

3. 공공기관 수요 유류(油類)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쇼핑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삭제

3. 가격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4. 삭제

5.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
계약을 포함한다)·다수공급
자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
에 부수되는 업무

가. 건축 및 토목용 자재, 도
로에 사용되는 물품 및 석
재가공품, 콘크리트제품
바닥·포장재 등

나. 운송장비, 특장차, 농업용
기계, 금속·플라스틱관류

사항을 분장한다.

1. (현행과 같음)

가. 건축 및 토목용 자재, 도로
에 사용되는 물품 및 석재
가공품, 콘크리트제품 바닥
·포장재 등

나. 운송장비, 특장차, 금속·
플라스틱관류 등

다. 일반장비 및 특수장비 등

2. 지방조달청 소관 단가계약물
품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수립

3. 건설환경분야 다수공급자계
약 업무처리규정 및 2단계경
쟁 업무처리기준 수립

⑧ 전기전자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하
다)·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다수
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
에 부수되는 업무

가. 전산 및 사무장비, 전자제
품, 교육용 제품, 텔레커뮤
니케이션 장비, 조명용품,
인쇄기, 사진기기, 농업용
기계 등

나. 방송통신장비, 전기시스
템, 공공안전 및 통제장비,
보안·감시 및 탐지장비 등

2. 전기전자분야 다수공급자계

등

6. 지방조달청 소관 단가계약물품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수립

⑦ 쇼핑몰단가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가. 전산 및 사무장비, 전자제품, 교육용 제품, 가구, 텔레커뮤니케이션 장비, 조명용품, 인쇄기, 사진기기 및 청각기기, 시계 및 보석제품, 출판물 등

나. 화학제품, 의약품, 광물류, 화초류, 비료 및 사료 등

2. 삭제

3. 전통공예상품, 전통주, 전통식품 등 전통문화상품 계약을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삭제

⑧ 쇼핑몰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가. 공구 및 범용기계, 전자재(建資材), 제조부품, 주방기구, 서비스업용기기, 스포츠용품 및 레저용품 등

나. 방송통신장비, 전기시스템, 유체조절기기, 실험실용 실험기기 및 검사기기, 공공안전 및 통제장비, 보

약 업무처리규정 및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수립

⑨ 보건의료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행과 같음)

가. 의약품, 화학제품, 광물류, 화초류, 비료 및 사료, 가구, 청각기기, 시계 및 보석제품, 출판물 등

나. 화공·섬유제품, 금속기자재, 실물모형 등

2. 전통공예상품, 전통주, 전통식품 등 전통문화상품 계약을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⑩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행과 같음)

가. 첨단산업(선박, 드론, 태양광발전장치, 전기·수소 자동차, 의료장비 등)

나. 융복합산업·녹색(친환경)제품 등

2. 첨단융복합 분야 신상품 다수 공급자계약 및 관리

안·감시 및 탐지장비 등

제7조의2(신기술서비스국) ① 신기술서비스국장은 -----

---.

② 신기술서비스국에 기술서비스총괄과·정보기술계약과·우수제품구매과·서비스계약과 및 건설용역과를 두되, 기술서비스총괄과장·정보기술계약과장·우수제품구매과장·서비스계약과장 및 건설용역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술서비스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로 창출된 새로운 물품(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이하 “신기술물품”이라 한다) 및 용역 종합구매계획의 수립·조정

2.~9. 신기술물품·용역 -----

10.·11. (생략)

12. 조달청의 평가·심사·심의 관련 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생략)

④ 정보기술계약과장은 다음 사

제7조의2(기술서비스국) ① 기술서비스국장은 -----

② 기술서비스국-----

건설기술계약과를 -----

--- 건설기술계약과장-----

③ (현행과 같음)

1.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의 종합구매계획 수립·조정

2.~9.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

10.·11. (현행과 같음)

<삭 제>

1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3.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4. · 5. (생 략)

⑤ ~ ⑥ (생 략)

⑦ 건설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제8조(시설사업국) ① (생 략)

② 시설사업국에 시설총괄과 · 토목환경과 · 건축설비과 · 시설사업기획과 · 설계예산검토과 · 예산사업관리과 및 공사관리과를 두되, 시설총괄과장 · 토목환경과장 · 건축설비과장 · 시설사업기획과장 · 설계예산검토과장 · 예산사업관리과장 및 공사관리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생 략)

④ 삭 제

⑤ ~ ⑧ (생 략)

⑨ 예산사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 4. (현행 제3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건설기술계약과장-----.

1. ~ 5. (현행과 같음)

제8조(시설사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설총괄과 · 공사원가기준과 · 토목환경과 · 건축설비과 · 시설사업기획과 · 설계예산검토----- 시설총괄과장 · 공사원가기준과장 · 토목환경과장 · 건축설비과장 · 시설사업기획과장 · 설계예산검토과장 -----.

③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⑤ 공사원가기준과장-----.

<신 설>

1. ~ 5. (생 략)

⑩ 삭 제

⑪ (생 략)

제8조의2(공공물자국) ① (생 략)

② 공공물자국에 원자재비축과 · 해외물자과 · 물품관리과 · 국유재산기획과 및 국유재산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원자재비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④ ~ ⑦ (생 략)

제16조(혁신조달기획관 등) ① 혁신조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혁신조달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혁신조달기획관 및 혁신조달운영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18조(한시정원) ① (생 략)

1. 공사 원가관리 총괄

2.~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⑪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공공물자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략비축물자과 · 해외물자과 · 물품관리과 · 국유재산기획-----.

③ 전략비축물자과장-----.

1. ~ 12.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신성장판로지원과) ① 신성장판로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신성장판로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18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혁신지향 공공조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조달청에 둔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12호, 2019. 2. 26.>	음) ② ----- ----- ----- ----- <u>2025년 6월 30일</u> ----- ----- -----. <삭제>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조달청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34	535	+1
일반직 계	533	534	+1
고위공무원단	7	8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8	27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9	20	+1

[별표 3의2]

조달청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40	541	+1
일반직 계	539	540	+1
고위공무원단	7	8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8	27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9	20	+1

[별표 8의2]

조달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관련)

현 행	개정안
1. 혁신조달기획관(존속기한: 2023년 6월 30일)	1. 삭제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2. 혁신조달운영과(존속기한: 2023년 6월 30일)	2. 신성장판로지원과(존속기한: 2025년 6월 30일)
총계 4	총계 4
일반직 계 4	일반직 계 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 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 신사무관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
3.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추진단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3. <생략>
<생략>	<생략>

[별표 9]

조달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8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 ·	· ·	· ·
2. 제18조제2항 관련 한 시 정 원 (존 속 기 한 : 2025년 6월 30일)	2. 제18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6월 30일)	2. 제18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6월 30일)
· ·	· ·	· ·